

電氣事業法 施行令 紹介

(大統領令 第13,076號. 1990. 8. 21)

An Introduction of Amended Enforcement Ordinance Relative to the Electrical Industry Law

李 愚 公

動力資源部 電力局 電氣技佐

I. 序 言

지난 해에는 그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約 17年 만에 電氣事業法の 全面的인 改正作業이 이루어져 지난해 12月19日에 우리나라 國會에서 電氣事業法 改正案이 議決되었으며, 今年 1月13日에 法律 第4214號로 公布되어 그 후 3個月 뒤인 4月13日부터 改正法律이 施行되기에 이르렀다.

改正된 法律의 主要內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用語에서 特定電氣事業者를 發電事業者로, 電氣工作物을 電氣設備로 그리고 保安擔當者를 電氣安全管理擔當者로 變更하였고(第2條),

2. 過去에는 行政內部計劃으로 樹立해 오던 長期電力需給計劃을 動力資源部長官이 同計劃을 樹立하여 公告하도록 法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第3條),

3. 電氣事業者 및 一定規模 이상의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長期電力需給計

劃에 附合하도록 電氣設備施設計劃 및 電氣供給計劃을 作成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提出하도록 하였다(第4條).

4. 電氣事業者가 指定된 期間內에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電氣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事業許可를 取消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事業許可의 取消나 事業의 停止 또는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하고 事業許可의 取消, 事業의 停止 또는 課徵金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利害關係人에게 意見을 陳述할 기회를 부여하였다(第14條).

5. 自家用發電設備에서 剩餘電力이 생기는 境遇에 그 剩餘電力은 一般電氣事業者에게만 供給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에너지의 利用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一般電氣事業者나 同一建物 또는 에너지 利用合理化에 依하여 集團 에너지 供給地域으로 指定을 받은 地域中 動力資源部長官이 指定하는 區域안에서는 他에 供給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第15條),

6. 電氣事業用電氣設備를 設置할 때에는 事

業許可事項 變更許可를 받도록 하던 것을 電氣事業許可와 電氣設備設置許可를 분리하여 電氣事業用 電氣設備 및 一定規模 이상의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設置許可를 받도록 하였으며 (第29條),

7. 自家用電氣設備中 一定規模 以上の 電氣設備를 設置할 때에는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고 一定規模 以下の 電氣設備를 設置할 때에는 動力資源部長官에게 申告를 하도록 하던 것을 一定規模以上에 대하여는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고 一定規模 以下는 市·道知事에게 申告를 하도록 하였다(第32條).

8. 動力資源部長官이 行하던 小規模 自家用發電設備·自家用受電設備 및 一般用電氣設備에 대한 安全管理業務를 市·道知事에게 移讓하여 安全管理 節次를 簡素化하고(第34條 내지 第38條),

9. 電氣安全管理의 效率性을 向上하기 위하여 小規模의 電氣設備에 對하여는 1人의 電氣安全管理擔當者를 選任하는 대신에 韓國電氣安全公社나 安全管理業務代行業體 또는 個人有資格者를 電氣安全管理擔當者로 選任할 수 있도록 하였고(第45條),

10. 電氣安全에 關한 調査·研究·技術開發 및 弘報와 電氣設備의 檢査·點檢業務를 遂行하게 하기 위하여 韓國電氣安全公社를 法律上의 地位와 責任 및 權限을 갖는 機關으로 設立하였으며(第48條),

11. 電氣設備中 原子爐 및 그 關係施設의 設置·維持·補修·運轉 및 保安에 關하여는 原子力法에 依하도록 하던 것을 原子爐 및 그 關係施設의 設置·維持·補修·運轉 및 保安에 關한 安全規制에 對하여만 原子力法에 依하도록 하였다(第61條).

이 외에도 여러가지 事項이 있으나 모두 열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이것으로 줄이

니 전기사업법을 參考하기 바란다.

II. 電氣事業法 施行令 紹介

1. 施行令改正 主要內容

電氣事業法 施行令의 改正理由는 電氣事業法을 全文改正 (90年 1月 13日 法律第4214號로 公布) 함에 따라 同法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 其他 現行 規定의 運營上 나타난 米비점을 補完하려는 것으로서,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動力資源部長官이 樹立해야 할 長期電力需給計劃의 樹立節次를 具體적으로 定한 것으로서 動力資源部長官은 2年마다 10年 以上の 長期電力需給計劃을 樹立하도록 하고, 同計劃의 樹立 또는 變更時에는 電力需給의 效率性 提高와 信賴性 向上을 위하여 關係行政機關·電氣事業者·電氣使用者 및 關聯專門家 등이 共同參與하는 長期電力需給計劃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하였고(第3條 및 第4條),

2.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提出하는 電氣設備의 施設計劃 및 電氣供給計劃의 計劃期間을 3年으로 하고 毎年 9月末까지 動力資源部長官에게 提出토록 하였다(第5條).

3. 電氣事業者가 準備期間內에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電氣設備를 設置하지 않을 境遇 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依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에 課徵金を 부과할 違反行爲의 種類 및 課徵金의 金額을 定하였으며(第10條),

4. 技術基準을 定함에 있어서 公共의 安全確保를 爲하여 技術基準 提定에 關한 安全基準을 定하였다(第18條).

5.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一定한 資格要件을 갖춘 者를 電氣安全管理擔當

者로 選任하도록 한 바 그 資格要件으로 技術能力, 資本金, 確保하여야 할 裝備 및 市·道知事에게 登錄 또는 申告할 事項 등을 定하였고(第19條 및 別表2),

7. 發電設備容量 3千킬로와트 以下の 發電事業에 對한 許可 및 安全管理에 對한 動力資源部長官의 權限과 出力 1萬킬로와트 미만의 發電設備과 電壓 20萬 볼트 미만의 送·變電設備에 對한 動力資源部長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하였으며(第27條 第1項),

8. 輸出自由地域 안의 自家用電氣設備의 臨時工事計劃에 申告受理·確認點檢·技術基準 適合命令·安全管理規定의 受理 및 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選任 또는 解任申告受理 등에 對한 動力資源部長官의 權限을 商工部長官에게 委託하였다(第27條 第2項).

9. 그리고 電氣設備에 對한 檢査의 專門性確保와 檢査의 效率性向上을 위하여 動力資源部長官 및 市·道知事의 檢査權限을 韓國電氣安全公社에 委託하였다.

2. 改正된 電氣事業法施行令 紹介

第1章 總 則

[第1條(II)의 이 令은 電氣事業法(以下 “法”이라 한다)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해 설〉

本條는 이 令에서 規定할 事項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 令에는 法에서 委任한 事項은 모두 規定함은 물론 法에서 委任된 事項이 아닐지라도 法에서 주어진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範圍內에서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을 規定한다는 意味이다.

[第2條(電氣設備에서 除外하는 電氣設備) ①

法 第2條 第7號에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設置되는 것”이라 함은 當該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가 그 機能을 維持하도록 하기 위하여 設置되는 電氣設備를 말한다.

②法 第2條 第7號에서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것을 말한다.

1. 電壓 30볼트 미만의 電氣設備로서 電壓 30볼트 이상의 電氣設備와 電氣的으로 接續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 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受電設備를 除外한다)]

〈해 설〉

本條는 電氣設備에서 除外되는 電氣設備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具體적으로 定한 것으로서, 第1項은 電氣設備가 비록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設置되는 것이라도 그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유지하는 데 必要한 것 이외에는 電氣設備로 본다는 뜻이며, 發電車·變電車·발전함 등은 他에 電氣를 供給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電氣設備이다.

第2項은 電氣를 使用하는 設備이기는 하지만 法令의 適用이 不必要한 設備나 用途上 目的이 전혀 다른 것은 法令의 適用을 排除하기 위한 것으로서 第1號는 電壓이 매우 낮아 취급상 人体나 物체에 지장을 줄 위험이 없는 30볼트 미만의 電壓을 使用하는 設備가 위험성이 있는 30볼트 以上の 設備와 直接的으로나 또는 電磁氣的으로 連結이 되어 있지 아니한 設備는 電氣設備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며, 第2號는 電氣通信法의 適用을 받는 電話交換機, 電波送·受信機, 電話機 등은 이 法令의 適用對象에서 除外한 것이다.

[第3條(長期電力需給計劃의 樹立節次 등)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2年마다 長期電力需給計劃을 樹立하되 그 計劃期間은 10年 以上으로 한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經濟事情의 變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長期電力需給計劃을 變更할 수 있다.

③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長期電力需給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 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關聯되는 資料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

〈해설〉

本條는 長期電力需給計劃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計劃의 期間은 發電所의 建設工期(原子力發電所의 경우 準備段階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約10년이 所要됨)를 考慮하여 最少限 10年以上으로 하였고, 國內外 經濟事情의 變化에 따라 電力需要도 많이 變動하기 때문에 計劃 適切한 調整으로 電力供給의 經濟性 向上을 위하여 長期電力需給計劃을 每2年마다 다시 檢討하여 樹立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第2項은 經濟事情의 급격한 變化나 電力需要의 급작스런 變動으로 이 長期電力需給計劃의 調整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計劃의 變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第3項은 長期電力需給計劃의 樹立이나 變更을 함께 있어서 計劃의 效率性과 合理性을 기하고 보다 正確한 計劃을 수립하고자 電氣事業者나 自家用 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資料를 얻기 위한 것이다.

〔第4條(長期電力需給計劃 審議委員會) ① 第3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長期電力需給計劃의 樹立 또는 變更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動力資源部に 長期電力需給計劃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의 委員長은 動力資源部次官이 되며, 委員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經濟企劃院·財務部·商工部·動力資源部·建設部·科學技術處 및 環境處 所屬 公務員中에서 當該 機關長이 指定하는 2級 또는 3級 公

務員 各 1人

2. 電氣事業者 및 電氣使用者代表 各 1人

3. 電力產業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動力資源部長官이 委囑하는 者 10人 以內

③ 제2항 제3호의 規定에 依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이 委囑하는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④ 委員會의 운영 기타 必要한 사항은 動力資源部令으로 定한다.]

〈해설〉

本條는 長期電力需給計劃의 重要性에 비추어 動力資源部長官이 혼자서 本計劃을 樹立할 경우 他部門과의 연계나 判斷의 客觀性 등의 결여로 重大한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本計劃의 樹立에 관련이 있는 政府機關·電氣事業者 및 電氣使用者 그리고 이 分野에 學識과 經驗이 많은 專門家들로 構成되는 長期電力需給計劃 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計劃樹立에 관한 事項을 審議·檢討·調整하도록 한 것이다.

〔第5條(電氣設備의 施設計劃 및 電氣供給計劃) ① 法第4條 1項의 規定에 依한 電氣設備의 施設計劃 및 電氣供給計劃의 計劃期間은 3年으로 하되, 每年度 9月末까지 動力資源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法 第4條 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제출 및 申告에 관한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動力資源部令으로 定한다.]

〈해설〉

本條는 長期電力需給計劃의 合理的 樹立과 電力需給의 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電氣事業者나 自家用電氣設備中 一定 規模 以上の 電氣設備 所有者는 電源設備의 施設計劃(發電·送電·變電設備를 포함한다)과 電源設備의 廢止計劃을 當該年度 以後 3年間에 着工·建設·增設·施設容量變更·廢止·休止 등에 관한 事項을 기재하여 每年

度 9月末까지 動力資源部에 제출하여야 하며, 電氣供給計劃은 發電·受電 및 이에 수반되는 燃料·設備補修 등과 種別 電力需要量展望 등에 관한 事項을 기재하여 역시 每年度 9月末까지 動力資源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만일, 이의 提出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2章 事業

[第6條(事業許可의 申請) 法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電氣事業 또는 發電事業의 許可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에 動力資源令이 定하는 書類를 添부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의 姓名(法人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住所
2. 供給區域(一般電氣事業의 境遇에 限한다)
3. 供給相對方인 一般電氣事業者 및 供給地點(發電事業의 境遇에 限한다)
4. 供給區域의 電氣設備施設計劃 및 電氣供給計劃
5. 事業變更事由 및 變更豫定 年月日(變更許可 申請의 境遇에 限한다))

〈해 설〉

本條는 法 第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의 許可節次等を 規定한 것으로서 本令에서는 許可申請에 관한 一般的인 事項만 定하고 보다 具體的인 書類는 動力資源部令에서 定하도록 再委任하였으며, 部令에서는 事業計劃書·事業收支計算書·電氣供給契約書·電氣設備 現況 및 設置計劃書·電氣供給區域圖等の 書類를 添附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第7條(事業許可證)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法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할 때에는 그 申請人에게 事業許可證을 교

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事業許可證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許可年月日 및 許可番號
2. 許可받은 者의 姓名(法人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
3. 供給區域(일반전기사업자의 境遇에 限한다)
4. 供給相對方인 一般電氣事業者 및 供給支點(發電事業者의 境遇에 限한다.)

[第8條(事業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事項) 法 第6條 第7號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말한다.

1. 그 電氣事業의 開始가 電氣事業의 綜合的이고 合理的인 發展을 阻害하는 境遇
2. 그 電氣事業의 開始가 公共의 利益을 현저하게 阻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發電事業의 許可로 인하여 一般電氣事業者의 電力需給에 支障을 줄 우려가 있는 境遇]

〈해 설〉

本條는 電氣事業의 健全한 發展과 電氣使用者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電氣事業, 즉 一般電氣事業과 發電事業을 統制·調整하기 위한 것으로, 第1號는 새로운 電氣事業이나 既存의 事業을 擴張 또는 增加시킴으로써 電氣事業 全體의 發展에 支障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第2號의 新規電氣事業의 開始나 事業의 新·增設 등으로 國民의 利益을 阻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電氣事業의 許可나 變更許可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第3號는 發電事業의 新規許可로 因하여 電力供給能力이 과잉되거나 一般電氣事業者의 受電能力上 限界等 또는 一般電氣事業者 電氣設備의 利用率 低下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事業許可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第9條(事業의 讓渡·讓受 및 法人의 合併認

可申請) ①法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分의 讓渡·讓受 또는 法人의 合併認可를 받고자 하는 電氣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에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讓渡·讓受人의 姓名 또는 명칭(法人의 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
 2. 事業의 讓渡 또는 法人의 合併內容
 3. 事業의 讓渡 또는 法人의 合併豫定年月日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事業의 讓渡·讓受 또는 法人의 合併認可의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電氣事業을 適正하게 遂行하는 데 필요한 財務能力 및 技術能力이 있을 것.
2. 事業의 讓渡·讓受 및 法人의 合併으로 인하여 電力需給에 支障을 초래하거나 公共의 利益을 害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해설〉

第1項은 電氣事業의 讓渡나 讓受 또는 電氣事業者인 法人의 合併認可 申請에 관한 節次를 規定한 것이며, 第2項은 電氣事業의 讓渡나 讓受 또는 法人의 合併으로 因하여 電氣事業에 支障을 招來하거나 電力需給에 影響을 미치거나 또는 電氣料金を 引上하게 하여 結果적으로 國民經濟나 權益을 害할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認可를 함에 있어서 一定한 基準을 定한 것으로서, 第1號는 電氣事業을 遂行할 수 있는 資金能力과 財務構造를 가져야 하고 또한 技術人力과 裝備를 가져야 하며, 第2號는 事業의 讓渡·讓受나 法人의 合併後 電氣事業에 影響을 미쳐 電力需給을 不安하게 하거나 料金屬上 등으로 國民經濟에 影響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第10條(課徵金を 賦課할 違反行爲의 種別과 課徵金の 金額) ①法 第1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程度에 따른 課徵金の 金額은 別表1과 같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事業의 規模·違反行爲의 程度 및 違反回數等を 參照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の 金額의 5分の1의 範圍 안에서 加重 또는 輕減할 수 있다. 다만, 加重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總額이 5千萬원을 超過할 수 없다.]

〈해설〉

本條는 電氣事業者가 指定한 準備期間內에 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事業의 開始를 하지 않는 경우나 電氣事業者의 缺格事由에 해당된 경우 또는 本法이나 本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에 事業許可를 취소하거나 事業의 停止를 命함으로써 電力需給上 支障招來는 물론 公共의 利益을 害하게 되므로 許可取消나 事業停止 대신 課徵金を 賦課하고자 하는 것이며, 課徵金を 賦課함에 있어서는 電氣事業者에게 公權力에 의한 過重한 不利益處分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課徵金を 부과할 違反行爲를 明確히 定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定하므로 상호간의 權利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第2項은 違反行爲가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課徵金を 輕減하여 주며 違反回數가 많은 경우에는 加重의 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11條(課徵金の 納附)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法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違反行爲를 한 자에 대하여 課徵金を 賦課하고자 할 때에는 그 違反行爲의 種別과 해당 課徵金の 金額을 明示하여 이를 納附할 것을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知를 받은 者는 20日 以內에 과징금을 動力資源部長官이 定하는 收納機關에 納附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其他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그 期間內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事由가 없어진 날부터 7日 以內에 納附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程에 의하여 과징금의 納附를 받은 收納機關은 領收證을 納附者에게 交附하여야 한다.

④ 課徵金の 收納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を 收納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動力資源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⑤ 課徵金은 分割하여 納附할 수 없다.]

〈해설〉

本條는 課徵金の 賦課 및 納附에 관한 절차를 規定한 것이며, 第2項은 國民의 誠實義務과 權限을 尊重하여 不可抗力의 事件의 發生으로 課徵金の 納附가 不可한 때에는 그 不可事由가 없어진 날부터 7일까지 納附期限을 延期하여 주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第5項은 課徵金은 그 金額의 大小를 막론하고 여러차례 나누어 낼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電氣事業者의 財務能力上 5千萬원의 납부는 一時에 可能하기 때문이다.

〔第12條 (聽聞節次) ① 法 第14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日前에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의 住所不明 등으로 通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通知를 받은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은 指定된 날에 出席하여 意見を 진술하거나 書面으로 意見を 제출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은 그 要旨를 書面으로 作成하여 出席者 本人으로 하여금 이를 確認하게 한 후 署名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通知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意見陳述의 機會를 拋棄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明示하여야 한다.]

〈해설〉

本條는 電氣事業者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事業許可의 取消·事業의 停止 또는 課徵金を 부과함에 있어서 本人이나 그 代理人으로 하여금 意見を 陳述할 수 있도록 充分한 時間과 機會를 부여하고 本人이나 그 代理人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出席할 수 없을 때에는 書面으로도 意見を 提出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13條 (自家用發電 剩餘電力의 供給範圍) 法 第15條 第3項 第1號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同一建物”이라 함은 獨立된 하나의 建物 또는 同一所有者의 것으로서 담·울타리 其他의 施設物로 타인의 出入을 制限하는 構内に 設置된 2 이상의 建物을 말한다.]

〈해설〉

自家用發電設備에서 生産되는 電力은 原則적으로 他에 供給(販賣包含)할 수 없으나 獨立된 建物内に 있는 他人이나 담·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區域内の 所有者가 同一인 여러 建物 및 그 建物内の 他人에게는 自家發電 電力의 供給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第3章 業務

〔第14條 (供給規定의 認可基準等) ① 法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定의 인가 또는 變更認可의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電氣料金は 適正原價에 適正利潤을 합한 것일 것.

2. 電氣料金を 供給種別에 따라 區分하여 定하고 있을 것.

3. 一般電氣事業者와 電氣使用者間的 權利義務關係와 責任에 관한 事項을 明確하게 定하고 있을 것.

4. 電氣計器 其他의 用品과 配線工事 其他의 工事に 관한 內容 및 費用負擔 方法을 適正하고 明確하게 定하고 있을 것.

② 法 第17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

한 認可 또는 變更認可의 申請節次·申請方法 其他 필요한 사항을 動力資源部令으로 定한다.]

〔해 설〕

本條는 動力資源部長官이 電氣供給規程을 認可함에 있어서 電氣供給者와 電氣使用者의 權益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認可權者인 動力資源部長官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規定으로서 第1號는 電氣事業의 合理的인 運用과 電氣使用者의 利益을 最大한 保障하기 위한 것이며 第2號는 電力供給의 種類(例:家庭用·農事用·産業用·業務用等)에 따라 電氣供給原價가 差異가 있을 뿐만 아니라 産業體의 國際競爭力 提高等 政策의 인 要因을 감안하여 種別原價를 定하도록 한 것이며 第3號는 電氣供給者나 電氣使用者 相互間에 지켜야할 義務와 責任을 分明히 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第4號는 電氣를 주고 받음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各種 機器·配線·物品 및 電氣工事に 관한 事項과 이에 所要되는 費用負擔에 관한 事項을 명확히 定하도록 하였다.

〔第15條(需給契約의 認可基準等) ①法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需給契約의 認可 또는 變更認可의 基準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料金は 一般電氣事業者의 電氣料金を 引上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다만, 特定 多目的法에 의한 貯水를 利用하여 發電事業을 하는 發電事業者와의 需給契約에 있어서의 料金は 第14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을 準用한다.

2. 供給條件이 電氣使用者의 利益을 沮害하거나 沮害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3. 料金の 計算方法을 명확하게 定하고 있을 것.

4. 契約當事者間의 責任에 관한 事項 및 電氣計器 其他의 用品과 配線工事 其他의 工事に 관한 內容 및 費用負擔方法을 適正하고 明確하게 定하고 있을 것

③法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需給契約

의 認可 또는 變更認可의 申請節次·申請方法 其他 必要な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定한다.]

〔해 설〕

本條는 發電事業者나 自家發電者가 一般電氣事業者에게 電氣를 供給(販賣)함에 있어서 그 電氣의 生産原價가 너무 높을 경우 國民에게 不利益을 주게 되며 料金計算方法의 조작으로 料金體制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事前에 豫防하고, 또한 一般電氣事業者가 契約의 優位的 立場에서 發電事業者나 自家發電者에게 原價水準에도 못미치는 料金の 支拂로 그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需給契約의 認可를 받도록 한 것이다.

〔第16條(裁定節次) ①動力資源部長官은 法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通知하고 10日 以上の 期間을 定하여 意見書를 提出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動力資源部長官은 法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定을 한 때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各各 通知하여야 한다.

③第12條의 規定은 裁定節次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章 電氣設備의 安全管理

〔第17條(電氣設備의 設置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事項) 法第30條 第3號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말한다.

1. 電氣事業用에 있어서는 電氣品質의 顯著한 下墜이 豫想되어 電氣使用者의 利益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것.

2. 電氣設備의 經濟性을 현저하게 低下하여 電氣使用者의 利益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認定될 것.



3. 그 電氣設備의 設置가 公共의 利益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것.]

〈해설〉

本條는 電氣事業者나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者가 그 電氣設備의 設置로 因하여 國民에게 負擔을 주거나 損害를 끼치거나 環境의 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하여 國民이 입게 될 被害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措置로서 第1號는 電氣事業用으로서 電圧이나 周波數 또는 停電 등 電氣品質의 低下를 미리 豫防하고, 第2號는 電氣料金の 原價上昇 要因을 제거하며, 第3號는 電氣設備의 設置가 國民生活이나 公共의 安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이다.

〔第18條(技術基準의 制定) 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은 다음 各號에 의하여 定하여야 한다.

- 1. 電氣設備가 人体에 危害를 주거나 物体에 損傷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電氣設備의 손괴에 의하여 電氣供給에 현저한 支障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電氣設備가 다른 電氣의 設備 其他 物件의 技能에 電氣的 또는 磁氣的인 障害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電氣의 合理的인 使用을 위하여 적절하도록 할 것.]

〈해설〉

電氣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며 熱처럼 느껴 수도 없으며 또한 電氣壓이 높은 物体에 사람이나 植物 등이 닿으면 바로 火死해 버리는 아주 危險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 使用하게 되면 우리에게 는 더없이 안전하고 유용한 것이며 우리 生活이나 産業活動 등 어느 分野에서도 없어서 는 안될 重要한 것이다. 따라서 國民이 電氣를 보다 安全하게, 보다 有用하게, 보다 便利하게 使用하게 하기 위하여 電氣設備의 製作·設置·取扱·使用 등 모든 分野에 걸쳐서 安

全基準을 만들어 使用하게 하고 있다. 第1號는 電氣設備가 人体나 物体에 닿거나 또는 近接한 狀態에서 人体나 物体에 危害나 損害를 주지 않도록 絶緣이나 被覆을 잘 하도록 한 것이며, 第2號는 電氣設備가 風水害나 故障 또는 事故 등으로 인하여 破壞되어 電氣를 供給할 수 없는 狀態로 되지 않도록 한 것이며, 第3號는 電氣設備가 다른 電氣設備나 電子通信設備 또는 電氣通信設備 등에 電磁氣的으로 지장이나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 것이고 第4號는 電氣利用效率의 向上과 電氣節約을 위한 技術基準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第19條(電氣安全管理業務 代行者의 資格要件) 法 第45條 第2項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業務 代行者의 資格要件은 別表2와 같다.)

〈해설〉

本條는 中小企業이 電氣安全管理擔當者를 採用할 경우 負擔이 加重되므로 中小企業의 負擔輕減을 위하여 小規模의 自家用電氣設備에 대하여는 電氣安全管理擔當者를 채용하는 대신 一定한 資格要件을 갖춘 電氣安全管理 代行業體나 個人技術資格 所有者로 하여금 電氣安全管理 業務를 代行하게 하였고 그 資格要件으로 資本金·技術能力·保有裝備를 갖추고 市·道知事에게 登錄 또는 申告한 者로 하였는 바, 이는 安全管理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設備容量 500kW 以上の 業體에 대한 安全管理 代行時 補助員을 두도록 한 것은 安全管理의 內實化와 技能人力의 적극적인 活用을 위함이다.

〔第20條(電氣安全管理 代行業體의 登錄 등) ① 法 第45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安全管理 代行業體를 설립하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登錄申請書를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 또는 變更登録을 한 때에는 그 申請人에게 登録證을 交附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이 規定에 의한 登録證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登録 또는 變更登録 年月日
2. 登録 또는 變更登録 番號
3. 代表者의 姓名·名稱 및 住所
4. 事業區域
5. 有效期間

④ 第3項 第4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區域은 當該 代行業의 登録을 받은 市·道知事の 管轄區域안으로 한다.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録證은 3年마다 이를 更新하여야 한다.]

<해 설>

本條는 電氣安全管理 代行業을 하고자 하는 者의 登録節次와 事業區域을 定한 것이다. 第1項은 電氣安全管理 代行業을 하고자 하는 者(代行業체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그가 事業을 하고자 하는 區域을 管轄하는 者(즉, 特別市長·直割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登録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하며(만일, 仁川에서 代行業을 하고자 하는 者가 서울特別市長 또는 京畿道知事에게 申請書를 제출할 경우에는 登録申請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仁川市長에게 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함) 第4項에서 規定한 바와 같이 仁川市長에게 代行業의 登録을 필한 자가 서울特別市나 京畿道에 있는 自家用電氣設備의 安全管理를 代行할 수 없다. 第2項은 安全管理代行業의 登録 또는 變更登録을 畢한 때에는 반드시 登録畢證을 交附하여야 하며 이 登録證은 第5項의 規定에 따라 有效期間은 3年으로 되며 3年마다 이를 更新하지 않으면 無效로 되어 電氣安全管理 代行

事業체로서의 資格을 상실하게 된다.

[第21條(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選任 또는 解任 申告) ① 法 第45條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申告書에 動力資源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의 選任確認書를 첨부하여 이를 動力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電氣安全管理擔當者를 解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 提出期限은 當該事由 發生日로부터 15日 以内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動力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申告畢證을 交附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 외에 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選任·解任申告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定한다.]

<해 설>

本條는 電氣事業者나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者·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電氣安全管理擔當者를 選任 또는 解任하고자 할 때의 節次를 規定한 것이로서 第1項은 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選任 또는 解任申告를 함에 있어서 技師資格 所持者가 二重, 三重으로 選任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例로서 電氣技師를 統括하는 機關인 大韓電氣協會와 같은 機關)이 發行하는 二重選任 與否에 대한 確認書를 申告書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電氣技師들의 被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電氣安全管理擔當者를 解任하는 경우에도 그 指定機關을 經由하도록 하였다. 第2項은 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選任 또는 解任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申告書의 提出에 있어서 動力資源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의 確認過程이 있으며 우편으로 發送할 경우 最近의 우편 전달 期間 등을 감안한다면 電氣安全管理者 選解任申告書가 發送機關으로부터 接受機關에 도착되

러면 1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所要될 것을 감안하여 申告書의 提出期間을 15일로 定하였다.

[第22條(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職務中止期間) 法 第45條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安全管理擔當者가 一時的으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期間은 30일을 超過할 수 없다.]

〈해설〉

本條는 이미 選任된 電氣安全管理擔當者가 旅行이나 疾病, 其他 事由로 一時的으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나 電氣安全管理 擔當者가 解任되어 다른 電氣安全管理擔當者가 選任되기까지 그 期間동안에는 安全管理 代理者를 指定하도록 한 바, 資格없는 者가 長期間 安全管理 代行을 함으로 因하여 發生할지도 모를 災害를 豫防하고자 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空白期間을 1個月 以內로 제한한 것이다.

第5章 韓國電氣安全公社

[第23條(韓國電氣安全公社의 運營財源) ① 法 第4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出捐時期 및 方法 등은 動力資源部長官이 韓國電氣安全公社(이하 “安全公社”라 한다)의 事業計劃 및 豫算執行計劃의 妥當성과 電氣事業者의 意見を 참작하여 定한다. 이 경우 動力資源部長官은 安全公社 및 電氣事業者에게 그 出捐金의 出捐時期 및 方法 등을 書面으로 通報하여야 한다.

② 法 第4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費는 電氣設備檢査에 필요한 裝備·計測器 購入 및 設備投資 등에 所要되는 金額으로서 動力資源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電氣事業者가 負擔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公社에 대한 出捐節次 등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 令으로 定한다.]

〈해설〉

本條는 安全管理專門機關인 韓國電氣安全公社

의 運營財源의 一部를 電氣事業者로 하여금 出捐 또는 負擔하도록 하였는 바, 그 出捐金 또는 負擔金의 金額·出捐 또는 負擔의 方法 및 時期 등을 具體적으로 定한 것이다. 第1項은 韓國電氣安全公社가 出捐金を 交附받고자 할 때에는 安全公社의 每年度 事業計劃書 및 豫算執行計劃書를 動力資源部長官에게 提出하면 動力資源部長官은 그 計劃書의 妥當성과 電氣事業者에게 意見を 물어서 그 出捐金의 金額·出捐時期 및 出捐方法을 定하고 그 內容을 安全公社 및 電氣事業者에게 書面으로 通報하도록 하였다. 第2項은 電氣設備의 檢査, 檢査에 필요한 裝備·施設·人力 등의 確保·養成을 위하여 所要되는 安全管理費의 金額·負擔時期 및 方法 등은 수시로 變動되는 사항이므로 動力資源部長官이 決定하도록 한 것이다.

第6章 보칙

[第24條(意見陳述節次) 第12條의 規定은 法 第56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土地等의 出入을 許可함에 있어서 行하는 土地等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意見陳述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5條(準用事業의 設備規模) ① 法 第62條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設備規模”라 함은 容量 3千 킬로와트 以下의 設備規模를 말한다.

② 法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準用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類型을 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第26條(報告)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電氣安全管理業務의 效率의 推進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 안에서 市·道知事로 하여금 電氣安全管理에 關한 事項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法 第6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電氣供給業務에 관한 事項
2. 電氣事業用 電氣設備의 工事·維持 및 運營에 있어서의 安全管理에 관한 事項
3. 財務會計에 관한 事項
4. 法 第38條 第1項·第2項·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業務에 관한 事項

③法 第63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者·所有者 또는 占有者 및 安全公社가 動力資源部長官에게 報告할 事項 및 그 節次·方法 등은 動力資源部令으로 定한다.]

[第27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法 第6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한다.

1. 發電施設容量 3千 킬로와트 以下の 發電事業에 대한 法 第5條 내지 法 第15條·法 第17條 및 法 第20條(法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需給契約中 電氣料金에 관한 事項은 除外한다)·法 第31條·法 第33條 내지 法 第42條·法 第44條·法 第45條 및 法 第73條의 權限

2. 法 第3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 및 그 變更申告의 受理. 다만, 出力 1萬 킬로와트 미만의 發電設備과 電壓 20萬 볼트 미만의 送·變電設備에 限한다.

3. 法 第3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工事計劃의 申告受理 및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工事計劃의 變更 또는 中止命令. 다만, 電氣事業用 發電設備은 出力 1萬 킬로와트 미만에 限한다.

4. 法 第4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事業者의 發電設備, 其他 安全管理과 關聯된 物件의 確認·點檢. 다만, 出力 1萬 킬로와트 미만의 發電設備과 電壓 20萬 볼트 미만의 送電·變電設備에 한한다.

5. 法 第4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

全管理規程의 提出 및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規程의 變更命令. 다만, 出力 1萬 킬로와트 미만의 發電設備과 電壓 20萬 볼트 미만의 送電·變電設備에 限한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輸出自由地域設置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自由地域안의 自家用電氣設備에 대한 다음 各號의 權限을 商工部長官에게 委託한다.

1. 法 第3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工事計劃의 申告修理 및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變更 또는 中止命令

2. 法 第4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點檢

3. 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의 適合命令. 다만, 法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電氣設備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受理 및 變更命令

5. 法 第45條 第7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選任 또는 解任申告의 受理

③ 動力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法 第65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權限을 安全公社에 委託한다.

1. 法 第34條·法 第36條 및 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의 檢査

2. 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의 臨時使用의 許容]

〈해 설〉

本條는 電氣事業法에 의한 動力資源部長官의 權限의 一部를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商工部長官에 委託하며, 또한 動力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의 一部를 韓國電氣安全公社에 委託하기 위한 것으로서, 第1項은 自家用電氣設備에 대한 이 法에 대한 權限의 一部는 이미 市·道知事의 權限으로 되어 있으므로 電氣事業用 電氣設備中 小規模電氣設備, 즉, 容量 3

千 킬로와트 이하의 發電事業用 電氣設備 (여기서는 發電設備을 말한다)와 一般電氣事業用 電氣設備中 出力 1萬 킬로와트 미만의 發電設備과 電壓 20萬 볼트 미만의 送電 및 變電設備에 대한 工事計劃의 신고 및 그 變更申告受理·臨時工事計劃의 申告 및 그 變更申告受理와 中止命令·安全에 關聯된 物件의 確認·點檢 그리고 電氣安全管理規定的 提出 및 變更命令 등에 관한 動力資源部長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하여 行政의 現地性을 확보하고 國民의 편의를 도모 하였다.

第2項은 輸出産業의 育成·支援을 위하여 輸出自由地域 안에서 自家用電氣設備을 設置·維持·運用하는 것 중 小規模로서 申告對象에 該當하는 設備의 臨時工事計劃의 申告 受理·그 計劃의 變更 또는 中止 命令과 確認點檢·技術基準 適合命令·安全 管理規定的 受理 및 그 變更命令·安全管理 擔當者의 選任·解任 申告 受理 등에 관한 動力資源部長官의 權限을 商工部長官에게 委託하였으며, 이 權限은 輸出自由地域 管理所長에게 再委任될 것이며, 小規模 自家用電氣設備中 市·道知事의 權限은 商工部長官에게 委任되지 않았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第3項은 動力資源部나 市·道知事は 事實上 電氣設備의 檢査에 대한 專門的인 知識이 부족하므로 電氣設備 檢査의 專門性 確保와 災害의 事前豫防을 보다 強化하기 위하여 電氣設備의 檢査權限을 모두 安全管理 專門機關인 電氣安全公社에 委託하였다.

[第28條(過怠料의 賦課 및 徵收節次) ①法第7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를 賦課할 때에는 當該 위반행위를 調査·確認한 後 違反事實과 過怠料의 金額 등을 書面으로 明示하여 이를 納附할 것을 過怠料處分 對象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以上の 期間을 定하여 과태료처분 對象者에게 口述 또는 書面에 의한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指定된 기일까지 正當한 事由없이 意見陳述이 없는 경우에는 意見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違反行爲의 種別에 따른 과태료의 金額은 別表 3과 같다. 다만, 動力資源部長官은 違反行爲의 程度 및 횟수 등을 參酌하여 그 該當金額의 2分の 1의 範圍안에서 이를 輕減하거나 加重할 수 있다. 이 경우 加重賦課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300萬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動力資源部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電氣安全管理代行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令 施行前에 動力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選任申告를 한 保安擔當者는 第1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0年12月31日까지 電氣安全管理代行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

〈해 설〉

附則 第2項은 電氣安全管理의 空白을 없애고 기존의 保安擔當者의 業務의 事前準備나 새로운 일자리의 確保期間을 考慮하였으며 또한 새로이 電氣安全管理代行業를 하고자 하는 者에게도 準備期間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 × ×

끝으로 電氣事業法의 施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密接한 것은 電氣事業法施行規則인 바, 現在 이 電氣事業法施行規則의 改正作業이 進行되고 있으므로 電氣分野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意見이 있으시면 大韓電氣協會나 韓國電氣工事協會, 其他 關聯機關을 통하여 建議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끝)

[별표 1]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제10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징금금액
1. 전기사업자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전기설비의 시설 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 4 조	2천만원
2. 전기사업허가 또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7 조	4천만원
3. 전기사업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 10 조	4천만원
4. 전기사업자가 법 제 8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사업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14 조	3천만원
5. 일반전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공급의무를 거절하거나, 허가받은 공급구역외의 구역에 전기를 공급한 경우	법 제 16 조	2천만원
6. 전기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규정을 사용하거나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 제 17 조	2천만원
7.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가 수급계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은 수급계약을 위반한 경우	법 제 20 조	2천만원
8. 일반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압 및 주파수등 전기품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21 조	1천만원
9. 전기사업자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27 조	1천만원
10. 일반전기사업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점검 또는 통지방법의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 38 조	1천만원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제28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전기사업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양도하거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 제 12 조 본문	300만원
2. 전기사업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여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하거나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법 제 28 조	200만원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제19조 관련)

구 분	대행사업체		개 인	비 고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도			
1. 자본금	2천5백만원	1천2백만원	—		
2. 기술인력	○전기기사(명)	7	5	1	개인은 전기기사 2급 이상 해당경력 3년이상 해당경력 5년 이상 용량 500kW이상 업체의 안전관리대행시에 한한다.
	- 1급	2	2	—	
	- 2급	5	3	—	
	○보조원(명)	3	2	—	
	- 전기분야기능사 2급 이상				
3. 사무실 면적 (m ²)	40	25	10		
4. 장비(종)	9	9	7		
○개인장비					
- 절연저항측정기 (500V, 100MΩ)	7	5	1		
- 접지저항측정기	7	5	1		
- 홀크론메타	7	5	1		
- 저압검전기	7	5	1		
- 고압 및 특고압검전기	7	5	1		
○공용장비					
- 절연저항측정기 (1000V, 2000MΩ)	1	1	1		
- 계전기 시험기기	1	1	1		
- 절연유 내압시험기	1	1	—		
- 절연유 산가측정기	1	1	—		
5. 등록 및 신고	당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자		당해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한자		

비고) 1. 보조원은 기술인력 3명당 1명씩 확보하되, 전기설비·발전·변전 및 송·배전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2. 개인장비는 기술인력 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